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양성필

전화 064-729-4422 / 팩스 0502-193-8359

보도자료

2025. 1. 8.(수)

제 목

무등록 여행업자와 공모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의료기관 적발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제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대주)는 **송치사건에서 확보한 단서를 토대로 직접수사에 착수하여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의 불법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에 가담한 의료기관 대표원장 등 3명을 입건,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제주 도내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에 대한 최초 적발 사례
- 공소사실 요지는, 의료기관 대표원장 A, 직원 B가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 C, D와 공모해, 이들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진료비의 10~15%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대가로 외국인환자를 소개받았다는 것**입니다.
- 제주지검은 이 사건 의료기관을 직접 압수수색하여 **무등록 여행업자들이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 후 급증한 중국인 관광객들을 제주도 내 의료기관에 불법으로 유치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은 혐의를 적발하고, 이 사건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들로부터 현금 수납한 진료비를 탈세한 정황도 확인하였습니다.**
- 제주지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의 특성을 악용하여, **외국인환자들을 과잉진료나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도내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해 향후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A(48세, 甲 의원 대표원장), B(51세, 甲 의원 경영이사)
- C(42세, 중국 국적), D(42세, 중국 국적, '24. 10. 31. 기소중지)
- A, B는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C, D와 공모하여, '23. 8. 30. ~ '24. 9. 20. C, D로부터 외국인환자 총 17명을 소개받아 진료비 합계 약 1억 180만 원에 대한 수수료 1,250만 원 상당을 지급[의료해외진출및 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위반]

2 수사 경과

- '24. 9. 20. 자치경찰단, C 관광진흥법위반 구속 송치
(C 휴대전화에서 관련 메시지, 여권사진 등 단서 확보)
- '24. 10. 2. B, C 의료해외진출법위반 인지
- '24. 10. 7. 제주지검, 甲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직접수사 착수
- '24. 10. 8. C 관광진흥법위반 구속 기소, D 관광진흥법위반 송치
※ D 관광진흥법위반 기소중지
- '24. 12. 20. A 의료해외진출법위반 인지
- ~ '25. 1. 피의자들 조사 및 범리 검토, 당청 의료자문위원회 회의 등
- '25. 1. 7. A, B, C 불구속 기소

3 수사 결과

① 제주 도내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의료해외진출법위반 최초 적발 사례

- 검사는 특사경(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단서를 토대로 직접수사에 착수, 의료해외진출법 시행('16. 6. 23.) 후 최초로 제주도 내 의료기관 개설자를 입건

※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해외진출법 제28조)

② 최근 제주도 내 불법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실태 확인

-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자 중국인 무등록 관광업자들이 도내 피부과·성형외과를 위주로 불법 외국인환자 유치행위까지 이르고 있는 상황

최근 10년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단위: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중국	79,481	99,059	127,648	99,837	118,310	162,868	31,084	28,021	43,923	112,135
일본	14,336	18,884	26,702	27,283	42,563	68,411	14,077	3,305	21,757	187,711
미국	35,491	40,986	48,788	44,440	45,213	58,358	18,004	28,889	44,095	76,925
기타	137,193	137,960	161,048	150,014	172,881	207,827	53,904	85,627	138,335	228,997
합계	266,501	296,889	364,186	321,574	378,967	497,464	117,069	145,842	248,110	605,768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4 국정감사 제출자료〉

- 이 사건 의원의 경우, 최근 2년간 무등록 유치업자를 통해 수납한 외국인 환자 진료비(6억 6,000만 원 상당)가 정식 유치사업자를 통해 수납한 금액(1억 1,500만 원 상당)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미자격 유치사업자 난립 방지를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제도 형해화
- 이처럼 무등록 업자를 통해 소개받은 외국인환자들이 현금으로 진료비를 납부할 경우, 의료기관은 무등록 업자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금 수납을 유도하고, 환자들로부터 수납한 현금 진료비는 세금 신고 과정에서 누락시키는 등 탈세행위로 이어질 가능성 농후

③ 도내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엄단

-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가 고가의 시술을 반복하여 받는 경우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과잉진료를 유도함으로써 이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반면, 외국인환자는 보험 등을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배상받기 곤란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액 1억 원 이상 ▲보험기간 1년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필요하고, ▲자본금 1억원 이상 ▲국내 사무소 설치를 요건으로 함

- 타 지역에 비해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제주에서 무등록 유치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외국인환자 유치는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보다 도민들의 의료이용 편의를 떨어뜨리고, 피부과·성형외과로 필수의료 인력이탈을 부추기는 등 도내 의료질서를 훼손시킬 가능성도 높음

※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지역 보건·의료서비스 변화’(‘24. 12. 18.)에 따르면 2024년 제주 지역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1위가 ‘긴 대기시간’(29.5%)으로 조사

4 향후 계획

- 제주지검은 피고인들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환자들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무등록 유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임 ☑